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. 2. 16 선고 2022가단10614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2. 16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5 지분에 관하여 2020. 1. 26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8,904,79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8,904,799원 및 그 중 2,192,635원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'청구원인', '변경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정하경

별지